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7
----------	-----

2019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7.25. 홍성룡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8. 13.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19년 9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되어야 함.
-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같은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진 섬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독도)을 정벌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음.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512년)에 처음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의 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각종 고문헌에도 일관되게 ‘우산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음.
- 특히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¹⁾를 제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광복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

1)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함.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외교부 홈페이지(<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 그러나 1905년 2월 일본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며, 시네마현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시네마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²⁾
-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를 일본의 현으로 편입·고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등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³⁾
- 또한 2008년 일본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사의 학습지도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문제를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를 2015년~2017년에 걸쳐 검정·승인한 바 있음.⁴⁾
- 2017년 6월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고, 2019년부터 고교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하는 등⁵⁾,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영토관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임.

2) 「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5.6.

3)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2019.6.

4)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9.6.

5) H, 고교서도 독도왜곡 의무화...교과서 역사·영토 도발 일지, 연합뉴스, 2018.8.30.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防衛白書⁶⁾)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 영유권을 현재까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교청서⁷⁾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들도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조치에 대한 철회와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함.
- 이에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2008년과 2010년, 2015년 세 차례 독도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 경상북도의회는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6) 일본정부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일본과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함.

7) 일본의 주요 외교활동과 정책 기초를 종합적으로 담은 연례보고서.

- 다만, 독도수호 문제가 외교·국방 등 대부분 국가사무의 영역에 속하고, 경상북도와 달리 직접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범위와 성과 등에 있어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는 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독도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전에 사무의 범위와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7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25일

발 의 자 : 홍성룡, 강동길, 박순규, 김정환,
김태호, 김경영, 김제리, 이상훈,
조상호, 이병도, 박상구, 황인구,
박기재, 최웅식, 이정인, 최 선,
송아량, 김 경, 채인묵, 이호대
의원 (20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수호에 앞장서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되어야 함.
-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우리 땅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시대 이래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주권과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 주장을 명기하고 같은 해 7월에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한바, 이는 현재 일본 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고 나아가 두 국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매우 악의적인 처사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해 그동안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을 취한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